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71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허종식·김교흥·신동근

유동수 · 김정호 · 어기구

정일영 · 박찬대 · 송영길

윤관석 • 이성만 • 박용진

배진교 • 이용선 • 유정주

강병원 · 고영인 · 최종윤

맹성규 · 황운하 · 강득구

남인순 · 김원이 · 홍영표

최혜영 • 박영순 • 양경숙

허 영 의원(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보호자로부터 방임 등의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8살, 10살 형제가 보호자 없이 자택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기 전 두 형제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3번이 나 접수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천가정법원에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음. 법원은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판결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보호자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두 형제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임.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학 대가해자인 것으로 의심되고 재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 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 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각 호의"를 "각 호 및 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
- ⑨ 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③ (생 략)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u>
	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
	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
	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호
	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되
	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
	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
	<u>할 수 있다.</u>
<u>④</u>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u>5</u>
수·구청장은 제3항 <u>각 호의</u>	<u>각 호 및 제4</u>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항의
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	
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	
어야 한다.	
<u>⑤</u> ~ <u>⑦</u> (생 략)	<u>⑥</u> ~ <u>⑧</u>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u> <신 설></u>	⑨ 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의 기준·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